

장해급여의 지급기준(제21조의2 관련)

장해등급	장해내용	노동력 상실률	급여금액
1. 초고 도 장해	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간 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 는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	100%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의 1,000분의 57,600에 해당 하는 금액
2. 고도 장해	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애가 남아 생 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 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	60%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의 1,000분의 34,560에 해당 하는 금액
3. 중등 도 장해	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애가 남아 취 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 람	40%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의 1,000분의 23,040에 해당 하는 금액
4. 경도 장해	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애가 남은 사 람	20%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의 1,000분의 11,520에 해당 하는 금액

비고

장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. 이 경우 장애
급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, 임상소견, 영상검사, 진단서 등
을 근거로 결정하되,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